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만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26

발 의 년 월 일 : 2023년 04월 27일
발 의 자 : 유만희,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영철, 김용일, 김재진, 김지향,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박영한, 소영철, 신복자, 옥재은, 이상욱, 이원형, 이종태, 최민규, 허 훈, 홍국표 의원(22명)

1. 제안이유

○ 발(足)은 신체 여러 부위와 연결되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신체 부위로서, 맨발로 걷는 것이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 걷기를 위한 보행로 조성 요구가 많은 상황임.

○ 이에 도시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와 그에 부수되는 시설을 조성·확충할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맨발 걷기’ 및 ‘맨발 보행로’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 걷기 활성

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